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Ⅱ)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張 設 鎬*)

Soo Ho Chang

- I. 序 論
 - II. 漁村契組織의 現況과 그 類型
 - 1. 漁村契組織의 現況
 - 2. 漁村契의 類型
 - III. 漁村契의 制度的 性格
 - 1. 漁村契의 理念
 - 2. 漁村契의 目的
 - 3. 漁村契의 制度的 性格
 - IV. 漁村契組織의 本質과 原則
 - 1. 組織의 本質
 - 2. 漁村契組織의 特質
 - 3. 漁村契의 組織原則
 - V. 漁村契組織上的 諸問題
 - 1. 漁村契員의 資格上的 問題
 - 2. 契의 區域問題
 - VI. 漁村契와 他水産協同체와의 關係
 - 1. 地區別水協과 漁村契
 - 2. 水協系統組織上的 漁村契의 位置
 - VII. 漁村契組織의 方向(結論)
 - 1. 將來의 漁村環境
 - 2. 漁村契의 育成方向
 - 3. 漁村契運動의 方向
- <수산경영론집(통권十五) 1978. 12에 게재>

V. 漁村契組織上的 諸問題

그러면 漁村契의 組織原則을 規定함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基本四大原則의 適用이나 기타 任意의 組織原則으로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고찰하기에 앞서 漁村契가 안고 있는 諸問題點을 고찰해 본다.

보통 協同組合에 있어서 組織을 決定하는 要因에는 ① 그 構成員의 資格要件과 ② 그의 業務區域의 設定 및 ③ 거기에서 취급하는 事業의 種類와 그 分量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①과 ②의 決定要因에 대한 問題點만을 提起해 두고자 한다.

1. 漁村契員의 資格上的 問題

(1) 法人加入의 問題

漁村契員의 資格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는 水協法과 同施行令에서 規定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 範圍內에서 個個 漁村契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契 스스로가 規定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水産廳에서 公示하고 있는 模範定款例가 原則적인 基準이 되고 있는 것이다.

水協法에 의하면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은 行政區域, 經濟圈 등을 中心으로 漁村契(새마을 養殖契를 포함한다)를 組織할 수 있으며……』(同法 第16條의 2-①)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 施行令에서는 『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同法 施行令 第6條)라고 規定되어 있다. 그리고 漁村契定款例

*) 釜山水産大學 水産經營學科 教授

에서는 『이 契의 區域內에 居住하는 者로서 組合의 組合員은 契에 加入할 수 있다.』(同例 第11條)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상에서 漁村契員은 地區水協의 組合員이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水協의 組合員』에 대해서는 水協法에 의하면 『그 業務區域內에 住所나 居住 또는 主事業場을 가지는 漁民으로서 1年을 통하여 60일 이상 定款으로 정하는 漁業을 經營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라야 한다 (同法 第26條(組合員)-①)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水協法에서는 水協의 組合員의 資格에 관하여 水協의 定款에서 任意로 限定할 수 있는 餘地가 거의 없는 住所要件과 漁業의 經營 혹은 그에 從事하는 日數로써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漁業을 經營하는 者』라고 할 때 보통 거기에는 自然人和 法人으로 區分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法人도 漁村契員이 될 수 있는지의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常識의으로 생각 할 때에는 ‘漁民’이라는 前提가 붙어있을 때는 個人으로서의 漁民만을 意味한다고 理解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水協에서는 法人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곧 水協의 組合員에 관한 法人의 加入問題에 대한 水協中央會의 有權的 解釋에서는 法人도 水協의 組合員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¹⁵⁾ 그에 따라 한국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에는 많은 法人이 組合員으로 加入하고 있다.

이와 같이 水協中央會의 해석에서 法人을 自然人和 同等한 資格으로 간주하여 組合員에 加入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의 有權的 解釋에서 法人도 1年을 통하여 60일 이상 漁業에 종사한다는 條件만으로써 漁民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 條件만으로써는 認定되기에 부적당 할 것이다. 그 이유는 漁民이란 法人이 아닌 自然人 個人을 指稱하며, 또한 막연하게 法人이 自然人和 同等한 정도의 經濟的 弱者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法人이 自然人和 마찬가지로 人格을 부여받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法律上의 人格이기 때문에 自然인을 指稱하는 漁民의 概念속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法人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類型이 있으며 그 중에는 巨大資本企業도 포함되고 있다.

協同組合이란 本來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 支配的 序列에서 탈락한 經濟的 弱者들이 大資本으로부터 自己들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近代의 制度의 產物이며 따라서

15) *1971年 강원도 김종권의 어업합자회사의 조합원 자격질의와 그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회신 (1971. 12. 28)-1171-2870

<어업합자회사의 조합원 자격질의>

가) 대표사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또는 주주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여부

나) 회사의 어장에서 배를 타고 작업하는 어부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사조합, 1171-2870(1971. 12. 28)>

가) 법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됨

나) 조합원 자격 있음

이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합자회사가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Ⅱ)

그의 特性은 人的結合體라고 하는 데 있다. 이 의미에서 보면 資本主義의 支配層에 속하는 資本企業은 당연히 協同組合의 對象에서 除外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法人을 加入시킨다고 한다면 大資本企業을 除外한 人的結合體인 中小企業에 해당되는 法人에만 限定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水協法이나 憲法上的의 精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곧 資本漁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水協의 組合員이 될 수 있는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制限하고 있다. 大統領令의 基準은 憲法精神에 依存한다고 하겠다. 水協法 第17條 ②項에 의하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漁業의 種類와 經營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同施行令에서는 業種別 水協의 設立은 ① 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 어업중 대형트롤 어업을 포함한다) ② 중형기선저인망어업 ③ 기선선망어업 중 대형선망어업 ④ 근해포경어업 ⑤ 정치어업 ⑥ 잠수기어업 ⑦ 기선선인망어업 ⑧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적인 어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어업 등으로서 (第29條) 特定 漁業의 經營基準이 設定되어 있다. 이들 漁業은 모두 近海漁業으로서 個個의 漁船規模로서는 中小企業規模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近海漁業은 1인1件主義의 許可方針에 따라 原則적으로 漁業者들은 單船經營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資本의 集中現象이 일어나고 있으며 個人經營으로서 統數에 달하며 資本企業에 못지않은 大資本漁業企業으로 成長하고 있는 業體도 있다. 單船經營을 하는 자도 法人會社를 設立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漁業의 經營基準이란 것도 現實과는 差異가 있으나, 企業적인 漁業體로서 水協의 組合員이 장려하는 特定漁業이 되기 위해서는 그 經營規模는 中小企業規模에 限定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憲法精神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곧 憲法 第120條— ②에 의하면 『農民과 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農民, 漁民, 中小企業者란 다같이 經濟的 弱者이기 때문에 그들의 保護를 위하여 國家에서는 自助組織을 育成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自助組織이란 農協, 水協, 中小企協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의 育成을 위하여 財政上, 政策上의 支援도 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의 精神으로 보아 漁民과 農民에 對한 最大의 經營規準이란 中小企業者의 그것을 超過하지는 못할 것이다.

參考로 中小企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인 中小企業者의 資格을 보면 工業, 其他 製造業, 鑛業, 運送業에서는 常時 從業員數가 300人이하, 總資產額은 5억원이하 이며, 商業 其他製造業과 관련이 있는 서어비스업은 常時 從業員數 20人이하, 資產總額 5千萬원(都賣業은 2억원) 이하로 規定하고 있다. (中小企業基本法 2條(定義)), 이러한 規程에서 보아 水協의 경우도 法人組合員을 認定한다면 그것은 總資產額最高 5억원을 限度로 해야 할 것이며, 이 精神에서 遠洋漁業 業種別 水協의 設立對象業種에서 除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年을 통하여 60일이상 漁業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써 法人에 대해서 資產規模에 관계없이 組合員의 資格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더우기 漁村契의 契員으로서 이러한 法人을 考慮할 수 없으며 오로지 自然人으로서의 漁民인 組合員에 限定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 漁民의 多重加入問題

法律上 漁村契員은 『契의 區域內에 居住하는 組合員』이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또한 水産廳의 定款例에서는 『契의 區域內에 居住하는 者』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組合員」과 契의 區域內에 居住하는 「者」는 同一한 意味로 理解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法律上 漁村契의 區域內에 居住하는 漁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契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먼저 水協의 組合員이라야만 漁村契員이 될 수 있는 條件이 있다. 이것은 漁民의 立場에서는 同一人인 漁民이 地區水協의 組合員으로 加入하고 또 漁村契의 契員으로서도 加入하는 二重加入制度이다. 따라서 地區水協과 漁村契는 同一漁村에서 同一의 漁民을 對象으로 하는 二重協同體制 또는 重複組織體制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면에서 보면 漁民은 漁業이외에 農業 등을 兼業하고 있다. 同一의 自然人으로서 漁民인 同時에 農民인 者가 많다. 그외에 漁村이라 하지만 農民이 더 많은 곳이 적지 않다. 1977年 3月 水協中央會의 漁村契實態調査에 의하면 全國 1,646個 漁村契區域에 있어서 全体區域住民에 對한 漁民의 百分構成比를 보면 <表-9>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이상인 漁村契數는 616個로서 全体漁村契의

<表-9> 各道別 漁村契別 漁村全人口에 대한 漁民數의 百分比

(單位: 個數, %)

지역 구분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충 남		경 기		강 원		제 주		전 국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90~100	76	22.89	38	24.20	396	56.40	7	11.48	49	42.98	36	33.65	11	14.47	3	3.09	616	37.42
80~89	44	13.25	24	15.29	73	10.40	13	21.31	9	7.89	13	12.15	11	14.47	5	5.15	192	11.66
70~79	25	7.53	35	22.29	50	7.12	7	11.48	5	4.39	5	4.67	9	11.84	2	2.04	138	8.38
60~69	25	7.53	18	11.46	36	5.13	4	6.56	8	7.02	16	14.95	11	14.47	6	6.19	124	7.53
50~59	25	7.53	17	10.83	07	3.85	3	4.92	12	10.53	11	10.28	13	17.11	11	11.34	119	7.23
40~49	31	9.34	7	4.46	37	5.27	5	8.20	3	2.63	6	5.61	2	2.63	15	15.46	106	6.44
30~39	37	11.14	9	5.73	23	3.27	4	6.56	7	6.14	4	3.74	9	11.84	15	15.46	108	6.56
20~29	28	8.43	6	3.82	24	3.42	10	16.39	8	7.02	8	8.41	9	11.84	17	17.53	110	6.68
10~19	18	5.42	3	1.91	25	3.56	4	6.56	7	6.14	5	4.67	1	1.32	13	13.81	76	4.62
0~9	23	6.93	—	—	11	1.57	4	6.56	6	5.26	3	2.80	—	—	10	10.31	57	3.49

※ 個數는 漁村契數를 意味함.

37.4%에 해당되며, 50~90%까지에 해당되는 漁村契數는 573個로서 全体에 대한 34.8%에 해당된다. 또한 30%~49%의 漁村契數도 무려 214個로서 곧 全体의 약 13%에 해당되고 있다. 여기에서 漁民이 住民의 50%이상을 집하고 있는 漁村契數는 全國에 1,189個로서 全國漁村契數의 72.2%에 해당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住民에 對한 漁民의 構成比는 漁業이 主業이나, 農業이 主業이나의 問題를 무시하고, 단순히 他業種에 대한 구성비에서만 본 것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II)

이다. 따라서 漁民의 農業兼業關係에서 主業이 어느쪽이냐의 問題를 考慮한다면 農業에 대한 比重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漁村의 兼業構造에서 同一地域에 水協이 있고 農協이 있음으로써 同一인이 水協의 組合員과 農協의 組合員으로 加入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協同組合運動이 産業別組織이기 때문에 同一地域에 水協과 農協의 單位組合이 각각 設立되어 別個의 獨自의인 立場에서 協同組合運動을 展開하고 있기 때문에 招來되는 不可避한 現象이다.

따라서 産業別 專門協同組合運動의 展開는 그 自体의 妥當性과 存立의 意義를 가진다고 하겠으며, 또한 兩協同組合自体의 立場에서도 組織上, 事業上 또는 營業上의 必要에서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住民個人의 立場에서도 兼業을 하는 限 根本的으로는 個人 自身の 選擇의인 問題이기는 하나 兩者에의 加入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成果主義의인 農·水協의 競爭의 組織強化 活動으로 그것이 오히려 弱者들을 괴롭히고 物質的, 精神的인 負擔을 加重하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必要惡이 될지도 모른다는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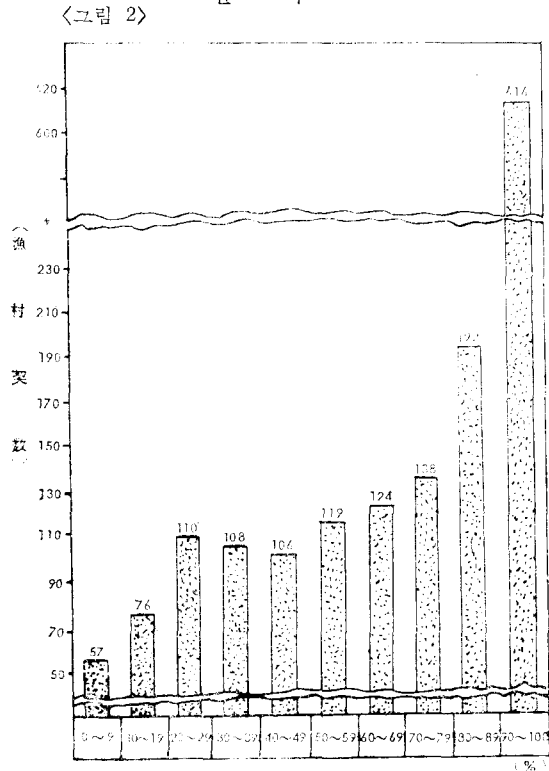
이러한 單位協同組合運動의 지나친 過熱競爭은 地域社會의 民心을 어지럽게 하고 순박한 農·漁民을 心理的으로 機械化하고 打算化함으로써 나아가서는 協同組合運動의 本質에 역행하는 地域社會의 分裂을 助長하고 따라서 組合의 事業을 沮害하는 要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同一地域社會에 地域協同組合으로서 水協과 農協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漁村契가 獨自의인 協同運動을 展開한다고 하는데는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漁村契의 課題와 方向은 더우기 地區水協의 그것과 重複되고 差別되지 않는에서 求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된다.

(3) 漁業의 純粹性 問題

漁村契는 水協에 비해서 業務區域이 狹小하고 日常의 包括的인 生活을 통한 協同이 아니고 漁業이라는 生産業을 통한 協同體이다. 따라서 漁村契는 水協보다 漁業의 純粹性을 그

전 국



固有의 特色으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基盤으로 하는 協同運動이 아니면 그의 存立意義가 희박해 질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漁村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漁業 이외에 많은 農土가 있고 그것을 基盤으로 하는 純粹農民도 있고 漁民의 대다수도 農土를 所有하고 있으며 또한 農漁村의 都市近代化 傾向에 따라 農漁業 이외의 各種 事業체가 增加해 가는 傾向에 있다. 特히 注目할 것은 漁民이라 하더라도 農土에 대한 愛着心이 대단하며 여유가 있으면 漁業에의 擴張投資나 再投資보다도 農土에의 投資를 希望하고 機會가 있으면 農業이나 其他業種으로 轉換을 하려고 하는 것이 一般漁民의 心理狀態이다. 이러한 意識에 사로잡혀 있는 漁民이 居住하는 漁村이란, 거기는 漁民과 더불어 農民, 農漁兼業民, 其他 業種民이 共存하는 村落이다. 이러한 漁村構造에서 漁村契의 組織은 漁業의 純粹性 없이는 그의 協同力 發揮은 큰 成果를 期待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漁業의 純粹性이 稀薄한 漁民을 構成員으로 하여 組織한다면 그것은 名目上이나 一時的인 利害關係에서 加入하는 자가 많을 것이며 그러한 構成員은 결코 契의 活動에 대해서도 消極的 態度를 가지게 된다. 그들에게 보다 큰 積極性을 요구하게 되면 他協同組合과의 關係도 있고 해서 二重, 三重苦를 겪어야 하고 결국은 離脫도 서슴치 않을 것이므로 결국 그들로 인하여 漁村契의 活動에 支障만 招來하는 結果가 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漁村契는 利益團體가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漁村契의 持續的인 存立과 그 機能의 效果的인 發揮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漁業의 純粹性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 漁業의 純粹性이란 곧 漁業에의 依存度를 의미한다. 漁業에의 依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漁業의 純粹性이 높다고 할 것이며 利益集團으로서의 團結力이 強化될 것이다. 이러한 純粹성은 곧 漁民의 資格規程, 바꾸어 말하면 漁民(漁業者)의 定義와 相通하게 된다.

漁民의 定義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FAO 專門家會議에서 決定하여 世界各國에 建議한 例가 있다. 곧 1959年 9月 「스코틀랜드」의 「애딘바라」에서 開催된 北大西洋 地域의 漁業統計에 관한 FAO 專門家會議에서 採擇된 建議書에 의하면 專業漁民(full-time fisherman)은 최소한 漁業에 그의 生計의 90% 혹은 勞動時間의 90%를 依存하는 사람이며 兼業漁民(part-time fisherman)은 30~90%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하 곧 生計依存 및 勞動時間이 30% 이하인 사람은 臨時漁民(occasional fisherman)이라 規定하고 있다.¹⁶⁾ 이러한 漁民의 定義에 의해서 보면 적어도 産業別 協同組合의 構成員이나 또는 同一地域에서 많은 種類의 地域協同組合이 併合하는데 있어서 특히 地區水協과 組合員과의 中間에 位置하므로써 獨立性을 維持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漁村契의 構成員의 資格은 최소한 上記의 兼業漁民 정도까지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우리나라 「水協의 組合員의 資格=漁村契員의 基本資格」을 一年

16) A. E. Ovenden F. C. W. A.;

Costs and Earnings investigations of primary Fishing Enterprises F. A. O. 1961 p. 12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II)

을 통하여 60일 이상이라고 한 것은 곧 勞動時間(日數)으로 計算하면 그 依存度가 16.67%에 불과하다. 이것은 上述한 臨時漁民까지를 包含하여 正組合員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와같이 臨時漁民까지를 對象으로 하여 漁村契를 組織한다는 것은 同一部落에 存立하고 있는 其他協同組合과의 併存을 생각할 때 獨自的인 協同體로서의 存立要件을 처음부터 弱화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漁村契를 地區水協의 下部組織으로서 部落組織化 또는 協業化를 目的으로 하는 동시에 漁民所得增大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는 그의 機能發揮가 不可能한 것이라 생각된다. 漁民에 있어서 共同漁場의 漁業利益을 多數人에게 그것도 臨時的 漁民에게까지 分配함으로써 沿岸의 純粹漁民만을 오히려 零細하게 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漁村契가 地區水協과 農協 등과의 活動에 있어서 重複性을 피하고 獨自的 立場에서 漁民을 위한 唯一한 部落 또는 小地域協同體로서 곧 零細한 沿岸漁民의 經濟的 地位를 向上하기 위하여 共同漁場의 管理主體나 協業化 推進體로서 機能을 發揮하고 零細漁民의 權益을 保護하는 奉仕團體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漁業依存度가 높은 構成員으로서 組織되지 않으면 그의 存在意義를 상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漁村契員 혹은 水協組合員의 資格은 최소한 一年을 통하여 100日(漁業依存度 30%이면 108日) 혹은 120日 이상으로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곧 이와 같이 漁村契員의 資格을 強化했을 때, 그것이 금후 漁村의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나 하는 問題가 있다. 그것은 최근에 있어서 漁家の 所得構成의 變化나 漁業의 變化 및 漁村의 變化 등을 볼 때 漁村契員(水協組合員)의 資格強化가 반드시 變化하는 漁村社會에 있어서 適應하는 漁村契로서의 存立에 有益한가의 問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例를 들면 最近 漁家所得의 構成을 볼 때 漁業의 專門性이 弱化되는 傾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漁家所得을 漁業所得과 漁業外所得으로 兩大別할 때 <表-10>에 의하면 沿近海漁家에 있어서는 1972年度의 漁業外所得이 23.0%였던 것이 76년에는 25.5%이며 1981년에는 30.7%를 豫想하고 있다. 이것은 옛날에는 沿岸漁場

<表-10> 漁 家 所 得 表 (單位:千圓)

區 分	'72		'76		'81	
	沿近海漁家	總 漁 家	沿近海漁家	總 漁 家	沿近海漁家	總 漁 家
漁 家 所 得 (%)	366 (100.0)	460 (100.0)	861 (100.0)	1,147 (100.0)	1,561 (100.0)	2,074 (100.0)
漁 業 所 得 (%)	282 (77.0)	400 (87.0)	650 (74.5)	937 (81.7)	1,081 (69.3)	1,587 (77.0)
漁 業 外 所 得 (%)	84 (23.0)	60 (13.0)	211 (25.5)	210 (18.3)	480 (30.7)	477 (23.0)
漁民 1人當所得	63 (\$ 158)	79 (\$ 198)	148 (\$ 371)	198 (\$ 495)	267 (\$ 673)	358 (\$ 894)

이 漁家の 全生計維持를¹⁷⁾ 위한 唯一한 手段이며 絶對的인 存在로서 漁業外所得은 別로 問題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工業化의 傾向과 漁業技術革新, 沿近海漁業資源의 고갈과 漁村의 都市化 등에 의해서 漁民의 漁業外就業이 擴大되고 특히 都市와 近郊地漁村 등에 있어서는 年間을 통하여 漁業에 從事하는 日數가 相對的으로 縮小되는 傾向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傾向은 금후 兼業化 또는 都市化의 進展 等に 의해서 더욱 현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漁家の 所得도 그 源泉의 開拓과 多樣化에 의해서 總合所得의 概念으로 移轉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漁村生態의 變化過程에 있어서 漁村契員의 資格規程을 純粹性 中心으로 強化한다는 것은 그러한 變化에 대한 適應과의 關係에서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의 解決은 곧 準契員(非組合員) 制度로서 可能하다고 본다. 現行法에서는 準契員을 入漁慣行者로서만 規定하고 있으나 이것은 金후 시정되어야 할 問題이며 漁村契員의 資格을 強化할 때 그 資格에 미달되는 同一地域區內에 居住하는 漁民(漁業者)에 대해서 契의 施設利用이나 事業에의 參與를 認定케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4) 非加入者 問題

다음에는 漁村契員의 資格과 地區水協의 組合員의 資格을 同一하게 부여하고 있을지라도 當該 地區水協의 全組合員이 반드시 漁村契의 契員으로서 加入하지는 않을 것이다. 漁村契에 있어서도 本人의 意思에 의한 加入脫退의 自由가 保障되고 있는 限, 地區水協의 組合員이라고 해서 당연히 漁村契에 加入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는 組合員의 資格을 가지는 者라 할지라도 一定한 手續節次를 밟지 않으면 정식으로 漁村契員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만일 漁民으로서 地區水協의 組合員이 될 생각은 없었으나, 漁村契의 事業에 魅力을 가지고 利用하고자 할 때는 漁村契員이기 전에 먼저 地區水協의 組合員이라야 한다는 原則에서,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 地區水協에 먼저 加入하여야 하고, 그 資格에 의해서 漁村契에 加入하여 事業에 參與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漁村契員의 資格이 곧 地區水協의 組合員에의 加入에 대한 間接的인 強制規程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規程은 漁村契로서는 宿命的인 條項으로서 사실상 地區水協에 대한 加入脫退의 自由原則이 制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同一 對象漁民에 대한 二重組織制의 矛盾이라고도 할 수 있다.

日帝下의 漁業組合에서는 組合이 設立되면 그 區域內에 居住하는 漁業者는 本人의 意思에 關係없이 當然히 組合員이 되는 無條件 強制加入制度였으나 現行의 水協制度下에서는 組合員은 個個漁民의 自由意思에 의해서 加入되고 있다. 현재의 水協은 漁業組合의 財産과 事業을 包括的으로 引受하여 業務를 開始한 特殊條件에 의하여 設立되었기 때문에 漁民의 거의 全部가 加入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나 漁村契의 組織은 水協法의 規程에 의하여 새로

17) 水協中央會, 水協長期發展計劃(1974~1981) p. 11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Ⅱ)

創設된 漁民의 協同組織體이며 그의 先行組織이 없었던 關係로 처음부터 自由加入制였다. 이 점에서 漁村契의 組織에는 다음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弱體性을 다소 틀어내고 있다. 곧 다음 <表-11>에 의하면 水協의 發足당시인 1962年度 全國의 漁家戶數는 약 202,200戶였으나 그간 漁業構造改善政策의 發効로써 1966년에는 195,686戶로 減少되었다. 當該

<表-11> 漁材契員의 加入率 (單位: 戶)

區分 年度	漁家戶數(A)	契員數(B)	加入率(B/A)%
1962	202,200		
1966	195,686	128,216	66.0
1974	200,630	154,711	77.0
1976	203,818	145,979	71.6

資料: 水協中央會

年度의 漁村契數는 128,216戶로서 全漁家戶數에 대한 66%에 해당되고 있었다. 이러한 構成比는 74年度에는 77%, 76年度末에는 71.6%로서 初創期에 비해서 다소 增加되었으나 年度別로는 增減現象을 보였으며 年平均은 70% 정도이다. 이것은 今後 水協의 對內的 活動에 있어서 契員의 結合強化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漁村契員의 構成內容을 보면 <表-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年度末 漁業總家口數 203,818戶에서 漁村契에 加入한 總漁村契 戶數는 115,806戶(56.8%), 그리고 準契員戶數는 30,173戶(14.8%)로서 總契員戶數에 대한 正契員數의 比率은 79.3%에 해당되며 후자는 약 20%에 불과하다.

準契員이란 본래 契員의 資格이 없는 者로서 契員總會 또는 總代會의 承認을 얻어 契에 加入한 者들이다. (水協法施行令 第7條-①)

準契員은 資格要件이 갖추어지면 契員으로 加入하거나 死亡 또는 離漁 등으로 變動이 빈번할 것이 예상되나 <表-12>에서 보면 濟州島地方에서는 準契員이 전혀 없는데 대해서 陸岸 漁村契에서만 準契員이 있는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準契員의 漁家에 대한 比重은 全体 漁家에 대해서는 14.8%, 契員加入者 全体에 대해서는 약 20%에 해당되고 있다. 漁村契員의 家口員 구성에서는 契員家口員數 244,796人, 準契員家口員數 64,532人이므로 全体家口員數(309,328人)에 대한 準契員家口員數의 比率도 약 20%로서 契員數의 比率과 一致되고 있다.

이와 같이 漁民의 漁村契에의 加入率이 70% 정도이며 또한 그 중에서 入漁慣行에 의한 準契員의 構成比가 약 2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漁村契의 主要事業과의 關係에서 考慮할 때 零細한 沿岸漁業의 協業化와 漁村契의 非經濟的 施設管理(船溜, 船着場, 魚礁, 乾燥場) 등에 非契員과 入漁慣行이라고 하는 外部에서의 參與나 協力은 대단히 중요한 課題라고 하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準契員에 대한 本質은 원래 契員으로 할 수 없는 漁民을 契의 施設의 利用이나 事業에 參與시키는 것이 適當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便宜上 이들을 契員과 同一하게 取扱하는 者들이라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契의 準契員은 契의 施設利用上, 기타 事業上에 參與시키는 것이 契의 經營上 有利하고 契의 目的이나 運營上에 있어서도 阻害要因이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範圍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表-12〉 管内漁業家口 및 人口 (1976年末 現在)

지부별	어업가구				어업인구				어업종사자			
	계원	준계원	비계원	계	계원	준계원	비계원	계	계원	준계원	비계원	계
경기	7,893	2,104	1,619	11,616	40,512	10,821	8,692	60,075	16,067	4,026	3,616	23,709
강원	5,026	1,725	7,788	14,539	26,820	8,709	39,383	74,912	7,304	2,526	10,560	20,390
충남	7,487	5,895	3,952	17,334	43,573	33,487	22,455	99,515	18,123	12,844	8,490	39,457
전북	2,281	107	3,873	6,261	13,477	610	22,264	36,351	5,103	264	7,763	13,130
전남	48,290	17,217	12,531	78,038	293,742	100,275	71,812	465,829	117,499	38,936	21,860	178,295
경북	12,675	245	5,563	18,487	69,289	1,352	29,520	100,161	22,882	390	10,239	33,511
경남	19,901	2,880	20,469	43,250	111,212	15,264	112,316	238,792	40,807	5,546	38,152	84,505
제주	12,245		2,044	14,293	58,978		10,023	69,001	17,011		2,704	19,715
계	115,806	30,173	57,839	203,818	657,603	170,568	316,465	1,144,636	244,796	64,532	103,384	412,712
구성비	56.8	14.8	28.4	100.0	57.5	14.9	27.6	100.0	50.4	15.6	25.0	100.0

이러한 觀点에서 볼 때 同一地域의 居住者로서 非契員에 대해서는 그의 事情을 고려하여 準契員의 資格으로 가급적 契의 事業에 參與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現行의 準契員制는 入漁慣行者에 대해서만 認定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慣行者 中には 他漁村에서 出稼하는 者가 포함되고 있다. 그들에 있어서는 當該 居住漁村契에 加入할 수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他漁村契에 대해서는 入漁權을 認定받아 二重加入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沿岸漁民에 대하여 共同漁場의 平等參與의 原則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特定人에 대한 重複利用의 機會를 부여하는 것이 되고 있다. 따라서 入漁慣行에 의한 準契員制를 消滅시킴으로써 封建寄生的인 不在漁民을 除去하고 共同漁場을 건설한 地域漁民에 歸屬시켜 公平利用을 原則으로 하고 地域利益共同体로서의 漁村契의 機能發揮를 圓滑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漁村契의 規模問題

漁村契의 規模를 決定하는 要因에는 一般的으로 組織的 要因, 事業的 要因, 經營的 要因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組織的 要因에 대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組織的 要因은 構成員數와 區域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區域의 大小에 관해서는 다음 節에서 取扱하고 여기에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II)

서는 漁村契員의 規模에 대해서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現存漁村契에 대한 契員들의 規模別分布狀況을 보면 1976年度末 現在 單位漁村契當 平均契員數는 70人이나 그 規模別로는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人 미만의 階層에 속하는 漁村契數가 653個로서 全國 漁村契數 1,650個에 대한 39.6%를 占하고 있으며, 50人 이상 100人미만의 契가 677個로 全體의 41%, 100人 이상 200人미만의 契가 278個로서 全體의 16.8%, 그리고 200人 이상의 漁村契數는 42個로 全體의 2.5%에 해당되고 있다.

여기에서 平均契員數 70人을 中心으로 볼 때 곧 50人 이상 150人미만의 契員을 가지는 漁村契가 890個이며 그것은 全體에 대한 53.9%에 해당된다. 그러나 壓倒的으로 많은 것은 100人미만의 階層으로서 거기에는 全體의 80.6%가 해당되고 있다. 이와같이 契員數 100人미만의 漁村契數가 全體의 80.6%, 그리고 200人 이상의 것이 全體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은 漁村契의 規模가 적은 것을 意味하나 그것은 원래 漁村契의 組織이 部落單位를 原則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水協法施行令 第2條). 그러나 이것도 1977年 現在 1漁村契에서 平均 2.1個 部落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¹⁸⁾

이상과 같이 契員數에 의해서 漁村契의 規模를 볼 때 어느 정도가 適正規模라고¹⁹⁾ 할 수

<表-13> 1976年末現在 契員家口數別 漁村契 分布 (單位: 漁村契數)

도	별	50명미만	50~100명	100~150명	150~200명	200명이상	계
경	기	46	43	10	3	6	108
강	원	31	37	5	1	2	76
충	남	49	47	14	3	1	114
전	북	45	14	2			61
전	남	280	277	107	29	11	704
경	북	35	87	21	8	6	157
경	남	157	138	28	9	1	333
제	주	10	34	26	12	15	97
계		653	677	213	65	42	1,650
구 성 비(%)		39.6	41.0	12.9	3.9	2.5	100

18) 1977年 4月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調査部의 漁村契實態調査에 의하면 全國의 自然部落數 3,530個가 1,650個의 漁村契를 組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漁村契에서 平均 2.1部落를 포함하고 있는 計算이다.

19) 適正規模의 概念은 規模의 經濟性(scale economies) 또는 不經濟性의 概念과 表裏一體가 된다. 이 경우의 規模에 대해서는 ① 工場(또는 事業所) 水準 ② 企業水準 ③ 産業水準을 들 수 있으나 여기에서 規模의 經濟性 또는 不經濟性이란 工場, 企業 및 産業의 規模가 擴大할 때 生産物의 一單位當 費用이 低下하는 事實을 意味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適正規模論이 主要問題가 되는 것은 工場規模의 經濟性(Economies of large scale plant)과 企業規模의 經濟性(Economies of large-scale firm)에 관한 것이며 協同組合이나 漁村契의 適正規模의 檢討도 이에 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있는가의 문제를 決定하기에는 곤란하다. 契員數 그 자체가 規模判斷의 決定的 因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理論上으로 볼 때는 漁村契를 單位協同組合으로 看做하느냐 혹은 單位協同組合과 漁民間의 協力機關으로 보느냐 또는 그 산하의 特殊單位事業체로 보느냐에 따라 問題를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理論上에서는 構成員의 多數說과 小數說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²⁰⁾ 小數說에서는 ① 構成員의 組合이 理想的으로 되기 쉽고 相互扶助의 效果가 좋으며 ② 構成員의 指導訓練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長點으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多數說에서는 ① 構成員은 共同的 利點을 活用하여 經濟的 結合을 하는 것이므로 共同에 대한 同調者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은 強力해지며 그 效果나 利益도 각 構成員에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동시에 ② 構成員數가 많은 것은 消極的으로는 經費의 負擔을 輕減하고, 積極的으로는 經營에 관한 財務的 方面의 健實性을 確保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上述한 小數說에서 보면 契員의 結合과 지도는 多數人으로서는 困難하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1,000人 이상의 組合員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地區水協과 같은 데에서도 아마 組合의 目的을 達成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는 그러한 組合의 解体가 마땅하다고 主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主張에도 불구하고 協同組合의 發達過程을 보면 小單位組合들이 統合하여 大單位化 되어가고 있으며 가까운 日本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法律을 制定하여 單位組合을 統合하여 大型化하는 運動을 展開하여 왔다.²¹⁾ 이러한 점에서 보면 小數說의 主張은 곧 協同組合의 對內活動에만 根據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對外活動이나 環境의 變化에 따라 組織의 要件도 變化한다는 것을 忘却하고 있는 낡은 靜態的 思考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一般的으로 協同組合運動에 있어서 構成員의 結合의 目的이 相互扶助에 있으며 그 對象은 '이웃'이며 '이웃'간에 있어서의 相對的 關係가 目的과의 一致에 의해서 集合하고 그 組織體를 통해서 全體的 結合의 素因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漁村契도 零細한 漁民階級이 相互扶助의 活動에 의해서 서로 漁業을 통하여 經濟的 地位를 確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漁村契 自体의 運動은 곧 漁民에 대한 奉仕를 그 目的으로 하며 그 趣旨나 活動은 漁民을 結合하는 것을 本質로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相互扶助의인 相對的 關係가 곧 '이웃'이라고 하는 關係이며 이것이 漁村契라는 組織體를 통해서 自然히 部落的 結合體가 되고 이 結合體는 里洞으로 또는 市·郡·面 혹은 全國을 單位로 할 수 있는 것이나 問題는 그것이 사람의 結合이며 市·郡水協과 漁民間의 協力組織이기 때문에 그의 組織基本이 되는 것은 部落的 集團이 그의 細胞組織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20) 山根 諒著 金融組合經營論, 谷岡商店印刷部 pp. 28~32

21) 日本에서는 1960年 4月 27日에 漁業協同組合整備促進法(第61號)을 制定하여 單位組合의 統合整備과 大型化運動을 展開하여 오고 있다.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Ⅱ)

漁村契의 存立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漁村契는 單位組合의 事業推進을 위한 下部協力組織으로서 部落組織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그 存立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漁村契에 대해서 地區水協의 事業推進을 爲한 下部協力組織 이상의 役割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漁村契를 단순한 共同漁場의 合理的 管理와 利用 및 零細漁業의 協業體 혹은 推進體로서가 아니라 經濟事業團體로서의 單位協同組合體로 規定하려고 하는 見解이다. 만일 漁村契를 經濟事業團體로서의 單位協同組合體로 간주한다면 漁村契에 있어서의 事業은 共同漁業權管理나 協業事業 또는 그것을 위한 契員指導事業 등 이외에도 經濟事業을 해야하는 동시에 그의 適正規模에 대해서는 다른 角度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例를 들면 指導事業, 곧 指導는 본래 個別的으로 하는 것이나 그의 對象은 部落이며 部落의 中心人物을 통하여 指導의 效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事業은 部落이나 小數의 構成員으로서는 그 成果를 期待할 수가 없는 것이다. 近代經濟社會에 있어서 小數構成員으로서는 市場競爭에 對抗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漁村契는 契員數, 業務區域 및 取扱事業의 範圍에 이르기까지 그 規模가 擴大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럴 경우 現存 地區水協活動과 完全히 重複되며 衝突될 것이므로 水協系統組織의 모순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現存 系統組織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해서도 漁村契를 地區水協의 下部末端協力組織으로 維持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構成員數의 小數에 拘束되지 않고 그 範圍에서 適正規模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契의 區域問題

漁村契의 業務區域에 관해서는 水協法에 의하면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은 行政區域·經濟圈 등을 中心으로 漁村契(새마을養殖契를 포함한다)를 組織할 수 있으며 그 業務區域은 漁村契의 定款으로 定한다.』(水協法 第 16條의 2-①)라고 規定하고 있으나 그러나 水産廳告示의 定款例에서 보면 法人漁村契의 경우도 前記 里·洞 非法人漁村契는 里·洞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 明白하지는 않으며 流動的이다(法人, 非法人, 漁村契의 定款例 各 第3條 참조).

이상과 같은 水協法上的 規程에서 보면 漁村契의 區域은 『行政區域이나 經濟圈을 中心으로』하되 原則적으로는 部落을 區域의 範圍로 하고 다만 共同漁場의 合理的 運營과 協業事業의 推進 등을 위한 경우에만 數個部落 또는 里·洞을 區域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漁村契의 설립취지가 地區水協運動의 下部組織으로서 組合員과의 사이에 介在하는 불만과 協同의 희박성을 補完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漁村契가 地域的 制約을 받는 것은 一種의 協同組合이기 때문에 本質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점도 있으나 地區水協과의 關係를 明白히 하기 위해서도 必要했던 것이다. 漁村契가 契員의 集合體로서 協同主義(隣人主義)를 背景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의 對象이 되는 契員의 居住地域에 制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그의 事業目的을 達成하는데 있

어서 必然的으로 要求되는 事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漁村契에 있어서의 地域的 制約은 契의 成立에 있어서 하나의 要件이 되며 그것에 의해서 契員의 結合程度를 어느 程度 強化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漁村契에 있어서의 區域은 法律上의 規定에 의해서 設定되는 것이나 이의 目標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行政區域과 經濟區域의 어느 쪽도 擇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상에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하고 流動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協同組合의 區域을 決定하는 目標設定의 基準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行政區域主義와 經濟區域主義

水協法上『行政區域 經濟圈을 中心으로』라고 한 것은 곧 行政區域主義와 經濟區域을 併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實제상 漁村契의 區域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行政區域을 標準으로 해야 할 것인가 혹은 經濟區域을 標準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問題이다. 水協法에 의하면 地區別水協은 市·郡이라는 行政區域에 依存하고 있다. 그러나 水産廳長의 許可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水協法 第16條의 2-②)라고 했으니 곧 經濟區域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漁村契의 區域에 대해서도 규정은 契의 定款으로써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原則上으로는 里·洞單位라고 하는 行政區域(自然地理이지만)主義이다. 곧 地區別水協은 1市·郡을, 그리고 漁村契는 里·洞單位로서 行政區域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里·洞이라고 하는 狹小한 行政區域이 오늘과 같은 競爭經濟社會에 있어서 漁村契의 組織에 最適條件이 될 수 있는가의 問題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漁村契의 設立目的을 地區別水協의 下部 組織機關으로 본다면 그것으로서도 適切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한 協同組合의 構成員의 小數說에서 主張하고 있는 바와 같이 里·洞정도의 小區域에서 構成員의 結合이 理想的으로 되기 쉽고 相互扶助의 效果도 좋게 나타나며 構成員의 指導訓練이 徹底하게 될 수 있다는 長點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生計의 重要源泉인 共同漁場의 合理的인 運營과 開發을 위해서도 人的集團으로서의 地緣共同体가 形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祖上傳來의 地先漁場에 오로지 家族의 生命을 依託하고 있는 生活主体의 結合이 가장 理想的이며 그것은 地域이 擴大되면 될수록 自然히 同質性을 상실하기 쉽고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이 弱化되므로 組織의 協同力이 둔화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만일 漁村契를 單位協同組織체로서의 經濟事業團體化한다고 한다면 部落이나 里·洞정도로써 만족할 수 없을 것이며 적어도 漁村契가 經濟機關으로서 그 自体의 事業遂行에 必要할 程度 곧 自立可能한 規模의 業務區域으로 擴大되어야 할 것이다. 곧 漁村契가 人的結合이라 하더라도 經濟的目的을 達成하려고 한다면 規模의 經濟性(scale economies)을 참작해야 할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現代社會에 있어서 人間의 日常生活은 經濟交涉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交通機關의 發達이 地理的 距離를 時間的으로 縮小하고 있을지라도 經濟的 區域의 設定 없이는 自立可能性이 없기 때문이다.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II)

(2) 大區域과 小區域의 問題

漁村契는 전술한 바와 같이 漁村에 있어서 社會利益共同體로서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그 本質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漁村契가 漁村社會의 利益共同體의인 機能發揮를 위해서는 本質적으로 二律背反의인 結果가 될지라도 區域의 擴大는 不可避할 것이다. 곧 精神主義와 能率主義의 差異에서 區域의 縮小的 慾求와의 對立이다. 漁村契에서 그의 結合유대의 強化에 目的을 둔다면 오히려 區域의 縮小的 傾向을 要求하게 될 것이며 對外的인 觀點에서라면 그 共同體에 結合하는 利害關係者의 多數에 따라서 나타나는 經濟的 効果는 擴大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漁村契의 規模가 擴大의 傾向을 나타나게 되어 區域도 확대 되는 傾向을 띠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漁村契의 區域의 大小問題가 發生하게 된다.²²⁾

一般的으로 大小區域은 契員의 相互扶助와 契가 授與하는 對人信用은 서로 잘 아는 것을 前提로 하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가급적 小區域으로 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契의 活動이란 契員의 相互扶助의 狀態이므로 契의 活動은 多數者를 結合하면 할수록 旺盛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大區域일수록 有利하다고 하겠다. 다른 觀點에서 보면 漁村契의 區域이 狹小할 경우에는 오히려 契員의 連帶責任感이 強하게 되며 全職業이 結合되므로 事業上의 便利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반대로 大區域은 契員의 稀少性이 나타날 뿐 아니라 大組織의 運營에 必要한 適切한 經營者의 求得難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小區域에서는 小數者의 結合이 되어 協同力의 發揮가 不充分하며 事業上에서도 情實이 介入될 可能性이 있으며 公平을 期하기 困難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小區域은 理想과는 달리 經營上의 妙를 기할수 없는 溫情團體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大·小區域說은 다같이 그의 主張에 相當한 理由가 있으나 問題는 漁村契의 經營的 見地에서 볼 때 그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가장 能率的인 標準을 採擇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漁村契를 단순한 地區水協의 協力機關으로서 또는 共同漁業權 管理團體로서 存立하느냐 혹은 經濟團體로서 存立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만일 하나의 單位經濟團體로서의 使命을 띠고 存立한다면 現在와 같은 部落을 區域으로 하는 極端的인 小區域制를 採擇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오히려 理想者의 興味를 들구는데 不適當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漁村契가 地區別水協과 마찬가지로 複數制의 經濟事業 곧 販賣, 信用, 購買, 利用 등 法律上 허용되는 많은 種類의 綜合事業團體이기 때문에 그러한 小區域主義를 採擇하더라도 그의 經營維持가 可能할 것이라고 主張할는지도 모르나 사실은 거기에 바르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交通의 發達과 市場競爭力의 激化로 인하여 經濟競爭이 一層 擴大되어가고 있는 實情下에서 小區域主義는 그러한 競爭에 相對적으로 對抗力이 弱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漁村契의 區域을 部落主義原則으로 하고 다만 共同漁場의 合理的 運營과 協業의 推進을 위한 경우에만 數個部落 또는 里·洞으

22) 山根 惠 著 金融組合經營論, 谷岡商店印刷部(1934年) pp. 18~21

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里·洞 또는 그 대상의 面 또는 數個 面으로 擴大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經驗에서 小區域으로서의 漁村契의 存立이 不可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漁村契가 法律上으로는 아무리 地區別水協의 下部機關이라 하더라도 多少의 機能發揮을 위해서는 規模의 擴大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現在의 漁村契는 法律上 要求하는 共同漁場의 合理的 運營과 協業事業의 推進체로서의 機能發揮에 필요한 適正規模의 確定이 보다 심중한 研究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Ⅵ. 漁村契와 他水產協同체와의 關係

1. 地區別水協과 漁村契

漁村契와 他協同組織체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水協系統上의 他組織과 水協系統 이외의 關係協同組合, 예를 들면 農協의 單位組合과의 關係를 들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水協系統上의 他組合과의 關係에 대해서만 限定하고 그것도 地區別 水協과의 關係와 水協系統組織上의 地位에 대해서만 考察해 보고자 한다.

먼저 地區別 水協과의 關係를 明白히 하기 위하여 水協法을 中心으로 兩者의 關係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組合員에 대해서

漁村契員은 地區別水協의 組合員으로서 當該契의 區域에 居住하는 漁民으로써 構成(水協法施行令 第6條) 되는데 반해서 地區別水協의 組合員은 當該區域內에 住所나 居所 또는 主事業場을 가지는 漁民(水協法 第26條)으로써 構成되고 있다.

곧 漁村契나 水協이 다같이 漁民을 그의 構成員으로 하고 있으나, 水協의 組合員은 法律上 定住의 意思를 要하지 않는 者라 하더라도 當該區域內에 住所를 가진 者 또는 主事業場을 가지는 漁民이면 누구나 組合員이 될 수 있는데 대해서, 漁村契員은 水協의 組合員이라 當該區域內에 居住하는 漁民으로써만 構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漁民의 立場에서도 當는 同一人이면서 居住要件을 내용으로 하는 漁村契와 住所要件을 내용으로 하는 水協에 各各 加入하므로써 결국 二重加入이 되는 것이다.

(2) 區域에 대해서

地區水協의 業務區域은 原則적으로 市·郡의 區域에 의하나(水協法 第16條一②) 漁村契의 業務區域은 行政區域, 經濟圈 등을 中心으로 하여 里·洞單位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共同漁場의 合理的 運營과 協業事業의 推進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隣接의 數個 里·洞 또는 面을 區域으로 하고 있다. 곧 水協의 業務區域은 市·郡이라는 비교적 廣大한 地域인데 반하여 漁村契에서는 그 地區水協의 區域을 形成하고 있는 單位社會共同체로서의 部落을 基盤으로 하여 行政區域, 經濟圈 등을 中心으로 契自体에서 任意로 그의 業務區域을 規定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漁村契의 區域이 市·郡의 地區水協의 區域을 分割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Ⅱ)

하여 가지는 小區域이라 하겠다.

(3) 事業에 대해서

漁村契의 事業은 지도사업, 漁業權의 取得 및 어업의 經營, 地區水協享有의 漁業權의 行使, 漁民의 生活必須品과 漁船 및 漁具의 共同購買, 共同販賣, 水産物의 간이 共同製造 및 加工, 漁村共同施設의 설치 및 운영, 漁業資金의 斡旋 및 배정, 漁民의 후생복리사업, 購買保管 및 販賣事業, 信用事業 其他 團體協約의 締結, 政府 및 水協의 委囑 및 補助事業 등이 主要事業인데 대해서(수협법 시행령 제16조), 地區水協에서는 上記事業 以外에 共濟事業, 運送, 通信事業, 借款事業(水協法 第65條) 등 漁村契보다 多少 事業의 範圍가 廣大하다고 하겠으나 대체적으로 同種類似的한 事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指導監督에 대해서

漁村契의 指導監督은 地區水協(수협법 시행령 제2조)과 水協中央會長(同施行令 第24條)이 행한다. 契長과 監事의 任免은 소속 地區別水協의 組合長에 의해서 수행되므로(동시행령 제12조) 會計業務에 대해서도 水協의 監督下에 있으며 따라서 事實上의 漁村契의 日常 運營指導와 管理는 地區別水協에서 행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地區別水協에 대한 指導監督은 水協中央會長의 指揮(水協法 第159條)와 水産廳長의 監督(水協法 第152條, 第155條, 第157條)에 의하여 運營관리 되고 있으나 日常 業務는 水協中央會의 指導監督下에 있다. 여기에서 漁村契는 地區別水協의 下部組織으로서 存立하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알 수 있다.

(5) 設立과 解散에 대해서

漁村契의 設立(수협법시행령 제4조-①)과 解散(동 제23조) 또는 合併(제17조), 分割(18조) 등에 대해서는 契員의 意見を 얻어 水協中央會長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地區別水協의 設立과 解散 또는 合併, 分割에 있어서는 組合員의 意見を 얻어 水産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水協法 第18條-⑦ 第69條-①, ② 第74條-①, ②) 따라서 設立과 解散에 있어서 전자는 水協中央會長에 의하여, 후자는 水産廳長에 의한 承認을 얻어야 可能하므로 이 점에서 전자는 水協活動의 下部組織의 位置에 있다고 하겠다.

(6) 法人格에 대해서

漁村契는 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水産廳長의 認可를 받아 法人으로 할 수 있는데(水協法 第16條의 2-②) 대해서, 地區水協은 水協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條件 法人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곧 漁村契의 法人化는 漁村契自体에서 任意로 할 수 있는데 대해서 地區水協은 無條件 法人이 되어야 하므로 組合員의 選擇의 自由가 없는데 差異點이 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觀點에서 볼 때 漁村契와 地區水協의 關係는 同一한 漁民이 地區水協의 組合員인 경우에 한해서 漁村契員으로서 加入이 가능하나 두 組織은 각각 獨立된 組

織으로서 法人格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漁村契의 運營權者인 契長의 任免權은 當該 地區水協의 組合長에 있으며 또한 契의 運營의 指導監督에 대한 權限이 當該地區水協의 組合長 또는 中央會長에 있다. 中央會長은 實際業務를 當該 地區組合長에 委任할 수 있으므로 漁村契의 사실상의 日常業務의 指導監督은 當該 地區水協의 組合長이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漁村契의 業務區域과 事業 등도 地區水協과의 關係에서는 內在性, 狹小性을 가지므로 漁村契는 地區水協의 下部末端組織에 불과하며 漁業權管理團體 및 漁村共同施設管理體로서의 特性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漁村契組織의 構成主体는 部落에 居住하는 地區水協의 組合員(契員)이 單位水協組織으로서의 地區水協의 最小下部組織 또는 基監組織 혹은 基礎組織으로서 그들의 協同運動을 效果的으로 수행하기 위한 末端組織體이다.

이에 대해서 地區水協은 水協運動의 基本單位組織이다. 水協法에 의하면 地區水協組織이란 本來 水協組織의 基本單位로서 市·郡을 그의 業務區域으로 하여 設立하도록 되어있다.

地區水協은 漁家經濟의 全般을 對象으로 하여 信用, 購買, 販賣, 加工, 利用 其他 各種의 事業을 綜合的으로 行하는 綜合地域單位水協組織이며 外國에서는 별로 그 例를 찾아 볼 수 없는 特殊한 協同組織體라 할 수 있다. 곧 外國에서의 購買나 販賣 등의 部分的인 漁業生産者協同組合과 消費者(從事者) 協同組合 또는 信用協同組合 등을 전부 包括한 綜合事業組織體로서의 地區水協이며 따라서 복잡한 綜合的인 經濟體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地區水協組織을 西歐의 單一專門組織과 달리 單位綜合地域組織으로 한 理由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意見을 달리 할 수 있으나 同一漁村, 同一漁家를 對象으로 各種專門水協이 設立되어 있을 경우에는 漁民의 協同이 아니라 오히려 分散, 分離를 助長하는 結果가 되기 쉬우므로 漁民에 필요한 各種事業을 兼業시킴으로써 有機的, 計劃的으로 漁民을 單一協同組織 속에 모두 包括하여 漁村地域社會의 經濟共同體로서의 發展을 強調하고 期待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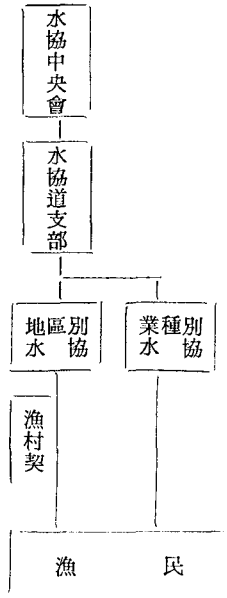
그러나 漁村契의 組織은 본래 自然發生的인 部落이라는 地域共同體의 利益團體로서 地區水協의 下部組織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漁村契가 多少 그 機能이 輕視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漁村近代化를 위한 새마을運動과 더불어 漁家所得增大 및 漁村環境改善을 위하여 또는 共同漁場의 合理的 利用과 그의 運營 및 零細小規模漁業의 協業化에 의한 沿岸漁業經營規模의 擴大 등 漁業構造改善政策 등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重要性을 再認識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2. 水協系統組織上的 漁村契의 位置

水協系統組織을 그림으로 表示하면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單位水協으로서의 業種別水協과 漁村契와의 關係를 보면 거기에는 垂直的으로나 水平的으로나 組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I)

水協의 系統組織圖



<그림-3>

織上 및 業務上에서 직접적인 關係는 전혀 存在하지 않는다.

그리고 漁村契와 水協中央會와의 關係도 前記한 바와 같이 漁村契의 創立, 分割 登記 등에 있어서는 水協中央會長의 承認과 指導監督을 받아야 하나, 그 業務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所屬 地區水協으로 하여금 代行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水協法施行令 第24條). 이것은 水協中央會는 地區別 水協의 聯合組織이기 때문이다. 곧 中央會長의 權限이 地區水協의 組合長에 委任되어 수행되는 것이며, 또한 반대로 地區水協의 組合長의 意見이 中央會長에 上達되어 綜合된 후 다시 下達되어 漁村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組織關係에 있는 것이다. 곧 漁村契는 地區水協의 聯合組織인 水協中央會의 會員의 下部遂行組織으로서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水協의 聯合組織은 單位組織인 各 地區別水協과 業種別水協이 結合하여 水協中央會를 組織하고 있는 單一系統組織으로서 극히 單純하다. 單位水協은 一線漁民을 構成員으로 하여 組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地區別水協이 그 中心이 되고 있다. 이 系統組織은 다시 漁民과의 사이에 小單位의 獨立된 基盤組織으로서 漁村契를 下部에 組織하고 있을 뿐 직접으로는 系統組織의 單位組織은 아니다.

協同組合의 系統組織이란 組合經營에 있어서 그 業務區域이 너무 擴大되면 組合員의 組合利用이 困難하므로 廣範한 區域에는 組合이 結合된 聯合會를 組織하여 事業의 集中量을 增大하는 方法을 採擇하고 더욱 廣大한 區域에서는 그 聯合會의 組合인 全國組織을 結成하여 事業을 展開하고 廣域의 市場에 對應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原理에서 우리나라의 水協에서는 地區別, 業種別의 水協이 基本單位組合이며 이들 單位水協이 그 事業을 全國적으로 展開하여 廣域市場에 對處하기 위하여 聯合會를 組織하되 그것을 바로 全國적인 聯合체로 한 것이 水協中央會인 것이다.²³⁾

이와 같은 것은 單位水協이 組合員의 事業을 集中하여 事業分量을 確保하고 그의 處理에 要하는 資本을 調達하여 經濟効果を 實現해 간다고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며, 營利企業이 資本을 集中하고 많은 資本을 運用하여 賣出額을 增大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資本의 增

23) 單位協同組合과 聯合組織體의 相互關聯機能으로서의 聯合組織은 系統組織과 聯合組織으로 大別되며 系統組織의 構造는 一般的으로 二段構造와 三段構造로 區別된다. 그러나 一般論으로는 單位組合의 平均規模가 작으면 작을수록 系統組織의 段階構造는 多段階가 되고 또한 單位組合間의 規模隔差가 極端적으로 擴大되면 系統組織의 段階構造는 不安定하게 되어간다.

수 산 결 영 론 집

殖을 도모해 가는 것과는 根本的으로 理想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漁村은 주로 零細漁民으로써 구성되고 있으므로 地區水協은 이들 漁民의 生活圈인 市·郡을 地區로 하여 設立되고 各 地區水協은 다시 事業의 集中量을 增大하기 위하여 全國的인 聯合體로서의 水協中央會를 組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水協系統組織은 二段階組織이며 이는 單位水協의 規模가 비교적 크고 따라서 三段階組織에 비해 優越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全國的인 組織網으로 組織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各市·郡의 地區水協은 단순히 하나의 水協으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全國的으로 系列化된 水協系統組合의 一環으로서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水協의 聯合組織 속에 포함되고 있는 地區水協(單位水協)은 單位組合自体를 사실상 增大하고 그것에 의해서 擴大된 經濟(市場)에 對應케 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한 例로서 信用事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普遍的인 性質에서 볼 때 資金의 地域差 및 季節差를 調節할 수 있다고 하는 特別機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써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地區水協은 그 事業의 全國的인 推進과 集中量의 增大를 기하는 한편, 또한 内部的으로는 組合員의 結合을 強化하고 協同運動의 效果增大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노력의 수단으로써 下部에 部落基礎의 小地域組織인 漁村契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 漁村契가 組合員의 結合을 強化하고 效果的인 協同組合運動을 하기 위하여 組織된 本來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 그 是正策으로서 최소한 近代的인 事業運營體로서의 經營能率의 發揮가 필요하고 經濟의 安定을 確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一定 이상의 事業分量을 實現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興件助成을 위하여 共同漁場의 管理權 부여와 法人格의 부여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漁村契는 法律上 인정하고자 하는 沿岸共同漁場의 管理主體로서 事實上의 機能을 發揮하게 될 것이며 當該 漁民의 利益管理機關의 性格에서 經濟事業體로 發展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地區別水協은 그의 包括區域이 일반적으로 廣範하고 多數의 漁村契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多數漁村契의 聯合體로서 漁村民의 生活에 필요한 經濟的 社會的인 共通事情을 綜合하여 實行하는 共通事務所의 性格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의미에서 地區別水協은 漁村이라는 部落共同體(Gemeinschaft)의 性格 보나도 一層 더 廣範한 集合社會的(Gesellschaft)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VII. 漁村契組織의 方向(結論)

1. 將來의 漁村環境

漁村契가 그 自体의 存立을 위하여 單純한 共同漁業權管理團體나 協業經營體로서가 아니라 地域經濟團體로서의 機能發揮을 위하여 漁村의 經濟圈域의 擴大를 도모하고 行政과의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II)

結合을 強化하여 行政의 末端機關의 性格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할 때는 地區別水協도 그 自体의 存立理由를 찾아 그의 機能의 獨自性を 強調하기 위하여 努力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共同販賣事業의 擴張으로 점차 消費地市場을 장악하여 가며 또는 漁村契를 包攝하고 統率해가는 獨自의 機能을 具備하여 가야 할 것이다. 今後 工業化에 따라 沿岸에 대한 工團의 造成과 國土擴張과 農耕地 擴大를 위한 干拓과 埋立 그리고 水質汚染 等에 의한 沿岸漁場의 荒廢, 漁村의 都市化와 또 한편에 있어서는 沿岸漁場의 人工的 造成은 沿岸漁場의 共同化 關係를 基礎로 하여 옛 漁村과는 다른 그 存在性格을 變革시키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高度經濟成長의 資本主義 體制下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獨寡占體制의 強化에 의한 經濟的 民主主義의 危機는 漁民의 協同運動의 活發화와 其他協同運動體와의 連帶化的 社會的 經濟的 意義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 豫想된다. 그러므로 今後의 水協運動은 組合內部的 民主主義의 確立이라고 하는 典型的인 課題를 추구하고면서 다른 면에 있어서는 大資本經濟에 抵抗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의 經營體로서의 擴充이 더욱 緊急을 要하는 課題로서 대두 할 것이다. 곧 資本体로서의 組合의 擴充에 대한 要請과 協同組合으로서의 本來的인 性格의 確保라고 하는 要請이 심각하게 擡頭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封建的인 人間關係를 가지면서도 實質的으로는 急速度로 資本主義의 關係를 成熟시키며 高度成長하고 있는 우리나라 經濟社會의 近代化의 一般的 特徵이 水協 뿐만 아니라 모든 協同組合에 投影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60年度初 水協이 發足한 이후 수차에 걸친 單位水協의 統合과 整備, 그리고 최근의 法人漁村契의 育成施策, 水協의 出資增強 問題 등은 水協 및 漁村契의 自立, 自主, 自助化 育成策이며 이것은 오로지 資本体로서의 組合의 強化를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措置는 本來的 協同組合思想과 비교하여 보면 資本組織으로서 크게 飛躍한 組織이며 이것은 漁村近代化나 漁業近代化를 위한 制度化 作業의 結果라고도 하겠다. 이와같이 볼 때 單位水協을 資本体로서의 強化와 漁村契와 單位水協의 自主性の 確立이라고 하는 課題를 어떻게 統一的으로 遂行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金후의 우리나라 水協運動에 부과된 中心課題의 하나라고 하겠다.

2. 漁村契의 育成方向

漁村契와 地區別水協 및 水協系統組織과의 關係를 整理하여 再論하면 問題는 兩組織間의 重複을 피하는 것이 最大課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同一한 漁民을 對象으로 두 個의 漁民協同組織이 存在한다는 것은 組織原則에도 違背되는 것이다. 또한 漁村의 實態에서 볼 때 漁村이라 하지만 사실 그것은 農漁混合村으로서 純粹漁村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表-9 參照). 이러한 農漁村的인 實情에서 同一部落에 農協과 水協과 漁村契가 亂立한다는 것은 末端協同組織의 宿命일지는 모르나, 그것은 同一理想을 가지는 協同組合運動에 오히려 防

害가 될 것이며 地域共同體의 分裂을 招來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結論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地區別水協과 共存하는 漁村契의 存立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漁村契의 育成方向은 漁業權管理機能과 漁村共同施設管理機能 및 協業化의 推進體로서의 機能을 發揮하는 團體로서 性格化하고 거기에 組合과 隣接市場과의 距離關係 등에서 漁業經濟圈의 形成이 가능한 地域의 漁村契에 限해서는 例外的으로 經濟共同體의 性格을 助長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市·郡의 地區水協을 流通經濟面과 金融面을 主軸으로 하여 集合社會의 經濟事業團體로서 育成시키는 것이 兩者의 重複을 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漁村契運動의 方向

다음에 漁村契의 協同運動을 금후 漁村近代化運動 또는 새마을運動과 어떻게 聯關지어 가느냐의 問題가 있다. 이것은 漁村契의 性格上 協同組合이기 때문에 水協과 漁民運動의 직접적인 擔當者로서의 位置를 確固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있어서는 水産情勢의 激變과 緊迫感에 의해서 水協의 漁村새마을運動의 積極的인 추진에 의해 漁民의 姿勢도 많이 변하여 오고 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종래 漁業組合時代의 타성으로 漁民 協同團體는 漁民의 要求보다 政策의 政策으로 제의 하달을 傳達하는 파이프役으로서의 性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漁村契를 이러한 漁村近代化 또는 새마을運動의 推進體로서 活用할 때 漁村契 自体를 行政의 下請機關화하느냐 또는 自發的인 運動體화 하느냐에 대한 問題가 있다. 지금까지는 水協이 漁民과의 中間에 漁村契를 間接적으로 活用하여 왔으므로 漁村契 自体가 어떤 面에서는 自主能力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漁村近代化運動을 漁村契가 직접 主導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問題가 發生했을 때, 消極的이고 依他心에 의해서 問題解決을 할려고 할 것이며 거기에 他의 支援이 없으면 漁民 個個人은 非協同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漁村契의 運動은 어떻게 하든 自發的, 自主的인 運動으로 유도하고 指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協同組合運動의 本質이기도 하다. 곧 協同組合의 理想은 同一地域社會에 居住하는 사람들의 結合에 의한 人間相互의 協力을 基盤으로 하는 것을 基本精神으로 하고있다. 여기에서 現實의 政策課題나 行政方針을 漁民 相互의 自發的인 協同運動으로 昇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協同組合 本來의 精神이 個人的 協同에 根據를 두고 있기 때문에 漁村近代化運動은 漁民 곧 漁村契의 自發的 協同運動으로서 積極的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他律的인 主導型的 漁村契運動은 努力에 비해서 成果가 작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他律性이 緩和되면 다시 原狀復歸하는 結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共同漁場의 合理的 運營과 開發, 零細漁業經營體의 大型화를 위한 協業化 등 漁村近代化 作業을 漁民 곧 漁村契員의 自發的 自主的 運動으로 昇化시켜야 할 것이다.